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00
----------	-----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마약류, 치료보호, 유해약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2조)
- 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 지원사업의 종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4조)
- 나. 전문기관 지정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 다.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지도·감독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항

나. 예산조치 : 2015년 60백만원 예산 편성(보건의료정책과)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무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6)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5.09.10 ~ 2015.9.30.)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 민간단체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3.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업
4.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4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실시와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안은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 등 유해약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연간 60백만원의 비용이 발생이 예상되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부서명 : 보건의료정책과 성명 : 김태금 실무사무관(2133-7533)